

최신 관세 동향 및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I. 최신 관세 동향

1. 2024 관세행정 운용방향
2. 주요 관세 동향
3. ACVA 운영 현황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I. 최신 관세 동향

1. 2024 관세행정 운용 방향

구 분	운용 방향
심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u>공평 과세를 통한 탈세 행위 엄정 대응</u><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통한 공평과세 기반 강화- 성실신고 담보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정기 관세조사 이외 비정기 관세조사 및 부분, 간이 관세조사 등 적극 활용• <u>통관적법성 및 공정 무역 거래 질서 확립</u><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 물량 추천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국민건강, 사회안전과 관련한 수출입요건 위반사항 관리 강화- 원산지 표시 단속 내실화 및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직접조사 권한 확보 추진 등 공정무역 질서 확립
조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u>경제 안보 침해에 대한 국경 대응 강화</u><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 규제를 회피하는 전략물자 및 첨단기술 불법수출 행위 집중 단속- 유체물 형태의 전략물자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형태 전략기술로 조사 범위 확대 진행• <u>불공정 무역 행위 중점 단속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u><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교역국이 체결한 FTA를 악용한 우회수입 위험 분석 및 원산지 검증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 확립- 비특혜 원산지검증 관련 원산지 조사 및 벌칙 근거 규정 마련 고려
외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외환 검사 체제 개편에 따른 단속 강화</u><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실지 외환검사 이외에 정기 외화검사 성격의 서면방식 외환검사 활성화• <u>자산 국외 유출 등 불법 외화 거래 차단</u><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자산 추적, 분석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가상자산 매개 불법외환거래 및 범죄 단속 기반 마련-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외국인 투자수익의 국외반출 행위 등 점검을 통한 외국인 재산도피 단속 확대

1. 최신 관세 동향

2. 주요 관세 동향

❖ 납세협력프로그램 참여 업체 vs 非 참여업체 Two Track 정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업체(ACVA) 등 납세 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세관 간 Partnership 구축 등을 통하여 성실납세유도 정책 확대
- 상대적으로 非 참여업체(예: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관세조사 실시
- '23년 12월 관세청은 관세조사 업무 지침을 훈령으로 개정 하여 관세조사의 정의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해당 개정에 따라 자료제출 기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경우 관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외환거래 집중 점검 등 외화유출행위 단속 강화

- '24년 1월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유관 단체와 협의회 구축 진행
- 외환유출 점검 시스템 모니터링 전문요원의 수출입실적-외환내역 대사 등 데이터 분석으로 불법 외환유출 의심 업체 선별, 전담 외환 수사 팀 마련을 통해 외환 유출 단속 강화
- 관세조사 시 외환조사부서와 합동조사 등 조사부서와 공조 강화 추세

❖ 관세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중요성 대두

- 최근 관세 행정 기조에 따라 세수 확보 뿐 아니라, Compliance 관련 사항 (전략물자, 수출입요건 등 관련 부정수출입죄, 부정환급죄, 가격 조작죄, 허위신고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세조사 진행 및 혐의 발견 시 조사과 즉시 이첩 진행
- 특히, '24년 1월 대외무역법 개정 및 전략물자 판정절차 점검 강화 등을 통하여 고의 또는 실수로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강화 예정

1. 최신 관세 동향

3. ACVA 운영 현황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ACVA 신청 및 처리 현황

연도	신청	결정	철회·반려
2007 ~ 2018	102	48	14
2019	28	14	5
2020	21	31	5
2021	31	22	5
2022	21	17	4
2023	34	18	6
누계	237	150	39

- 최근 5년간 신청 건수가 ACVA 시행이후 17년 간 신청건수의 **약 60%** 차지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 관점의 Risk 관리 인식 증가)

❖ 최신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현황

협정	서명일자	주요 내용 및 효익
한-필리핀 FTA	2023.09.07 정식서명 완료	- 수입품목 중 94.8%(우리나라) 및 96.5%(필리핀)의 관세 철폐 - 한국산 자동차 즉시 관세 철폐 및 친환경차 5년 내 관세 철폐로 수출경쟁력 개선
한-에콰도르 SECA	2024 中 정식서명 예정	- 수입품목 중 96.4%(우리나라) 및 92.8%(에콰도르)의 관세 철폐 - 최대40% 세율의 자동차 15년 내 관세 철폐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여건 개선
한-GCC FTA	2024 中 정식서명 예정	- 수입품목 중 89.9%(우리나라) 및 76.4%(GCC)의 관세 철폐 - LNG, 알루미늄 등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국내 시장 큰 효과 기대

II.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1. 과세자료(장부 및 증거서류) 확보의 실효성 제고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 요구 사유 추가
3.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및 조사, 부과 절차 등 마련
5.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6.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II.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1. 과세자료(장부 및 증거서류) 확보의 실효성 제고 (관세법 §12)

종 전	개 정
<p>□ 신고·제출 자료 보관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 - (추가) ● 보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또는 제출한 날로부터 5년 ● 보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서류, 정보보존 장치 - (추가) 	<p>□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u>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u> ● 보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보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u>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u> <p>**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세관장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u>의 경우에는 <u>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u>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p>

<개정이유>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II.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 요구 사유 추가 (관세법 §37조의4 ①)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자 자료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가격 결정자료, 증명자료* <p>* 제30조 1항에 따른 가산요소를 안분, 계산하기 위한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제출 방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시기<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심사 시- (추가)	<p><input type="checkbox"/> 자료요구 사유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제출 방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시기<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관세조사 시

<개정이유> 관세조사 조항의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4.1.1. 이후 자료요구 분부터 적용

II.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3.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법 §42조의2 ①)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정기간 경과 후<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이내 : 20%● 보정기간 경과 후<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하 : 10%	<p><input type="checkbox"/> 가산세 경감률 상향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정기간 경과 후<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이내 : <u>30%</u>● 보정기간 경과 후<ul style="list-style-type: none">- <u>6개월 초과 1년 이하 : 20%</u>● 보정기간 경과 후<ul style="list-style-type: none">- <u>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 10%</u>

<개정이유>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 유도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II.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및 조사, 부과 절차 등 마련 (관세법 §56조의2 신설 등)

종 전	개 정
<p>□ (신설)</p>	<p>□ 우회덤핑 방지제도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우회덤핑 물품*</u>에 대해 <u>덤핑방지관세</u> 부과 가능 <p><i>* <u>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사소,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물품 (구체적인 판별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u></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 미 적용 ●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 우회덤핑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규정은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 -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절차 이외 필요한 사항 등은 무역위원회가 기재부장관과 협의 후 고시

<개정이유> 우회덤핑 차단을 통한 덤핑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II.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5.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관세법 §116의6)

종 전	개 정
<p>□ (신설)</p>	<p>□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요구주체 : 과세정보 당사자</u> - <u>제공주체 : 관세청</u> ● 제공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u> <p>*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p> ● 제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본인 또는 제3자*</u> <p>* ①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② 세무사, 세무법인 ③ 세무대로 가능 회계사, 변호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p> ● 의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정보 유출 방지, 비밀유지, 과세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 제재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

<적용시기> '24.7.1.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II.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6.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FTA관세법 §35의2 신설 등)

종 전	개 정
<p>□ (신설)</p>	<p>□ FTA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규정 신설*</p> <p>* <u>종전에는 관세법 §38조의2에 따라 보정이자 면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 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세액보정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p>* ①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받기전 세액보정 신청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② 상대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결과 미회신 ③ 상대국 수출자, 생산자가 요구자료를 미제출, 거짓 제출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p>

<개정이유> FTA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24.3.1. 이후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